

(앞쪽)

제 호
역학조사반원증
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10px; text-align: center;">사 진 3.5cm×4.5cm (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)</div>
성 명
농림축산검역본부

55mm×85mm[보존용지(1종) 120g/㎡]

(색상: 노란색)

(뒤쪽)

역학조사반원증
소 속:
직 급:
성 명:
생년월일:
위 사람은 「식물방역법」 제31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8에 따 라 역학조사를 하는 사람임을 증명합니 다.
년 월 일
농림축산검역본부장 직인
1. 이 증표를 소지한 사람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「식물방역법」 제31조의6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·방 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, 이를 위 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
2.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.
3.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.